



의안번호	제호
회의 연월일	2021. . . (제회)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출부서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치안정보’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권한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 3.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 마. 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 바.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월 중 실시 예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찰관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활동”이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 ① 경찰관의 정보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3. 법령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4.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제출이나 의견표명을 강요하는 행위
5.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6.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7.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제5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를 위한 정보
4. 방첩·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5.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공공갈등·다중운집으로 인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
8.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제6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

- 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 밝힘과 목적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우
-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확인을 해준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정보의 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

의 확인 시에도 준용한다.

제7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 민간단체, 정당사무소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해야 한다.

제8조(정보의 작성)

- ① 경찰관은 수집한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 ①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 ① 누구든지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관은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160